

산업폐기물 총량제 도입키로

환경처, 96년부터 배출량 할당

환경처는 오는 96년부터 제지, 제철 등 폐기물이 많이 배출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폐기물 배출량을 할당, 이들 업종이 발생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산업폐기물 총량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96년까지 전국 매립시설에 대한 폐기물 매립지 현황지도 작성하고 매립시설 정비를 위한 폐기물처리 시설 정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등 폐기물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 폐기물 처리종합계획을 수립' 오는 12월초 환경 보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폐기물처리계획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세워지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2천1년까지 국민 1인당 하루 쓰레기 발생량을 92년 1.54kg에서 1.39kg으로 줄이고 생활쓰레기 관리구조도 현재 90%에 이르고 있는 매립비율을 45%로 낮추는 대신 재활용 소각비율을 30%와 25%로 높이는 등 쓰레기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통한 자원화에 환경정책의 주요 목표를 두기로 했다.

환경시설 자금지원 확대

환경처, 15일까지 용자신청 접수

환경처와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민간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도모하고 낙후된 환경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환경오염방지 자금 지원 신청(562-7229)을 받는다.

환경처는 이에 앞서 환경오염 방지 자금 용자 요건을 일부 개정하여 용자대상자 범위를 확대시행하므로써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별 용자금 대상자 범위 확대 내용 가운데 환경산업육성 지원자금의 경우 종전에는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환경기술을 최초로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만 자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를 개정, 기존 사업자에게도 용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 대상이 되는 환경 기자재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와 환경처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사업화하고자 하는자에게도 용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담양에 폐비닐 재생공장 준공

재생공사, 연간 5천톤 처리규모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 김창제)는 지난 11월 12일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원을리에 폐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를 회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재생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재생공장은 경북 안동에 이어 세번째로 건립된 것으로 호남지역의 농촌 등에 버려지는 폐비닐 등의 재활용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연간 폐HDPE 처리능력은 5천톤으로 여기서 약 450톤의 중간원료를 생산하게 된다. 생산된 중간원료는 민간 재생업체에 공급되어 플라스틱 깔판, 각종 호스, 파이프, 포장용기 등 HDPE의 신재 용도에 혼합, 사용하게 된다.

(표 1) 환경오염방지시설 자금 지원 내용

구분	중소기업방지시설지원	오수정화시설지원	환경산업육성지원	환경기술개발지원
대상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자금중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자 • 특별대책지역내 소기업체 • 환경관리모범업체 • 환경처 또는 환경관리 공단의 기술지원업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납부 또는 납부 예정자) 단, 설치 완료된 자 제외	특허, 실용신안,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환경기술 및 관세감면 대상 기자재, 환경처장관이 고시한 우수 분료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사업화(시설변경 포함)하는 중소기업자(폐기물분야 제외)	새로운 환경기술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자(폐기물분야 제외) 단, 은행감독인의 여신관리 대상 기업체 제외
규모	20억	20억	35억	10억
금리	연 7%	연 7%	연 5%	연 5%
한도	2억원 이내 (공동시설은 5억원)	5천만원 이내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5억원 이내 별도)	5천만원 이내
기간	10년 (3년거치 포함)	6년 (1년거치 포함)	10년 (3년거치 포함)	8년 (3년거치 포함)
취급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장기신용은행, 농협, 축협, 수협 (한국산업은행, 주택은행 제외)			

[표 2] '97년 자원 재활용 목표

품 목	'92년		'97년		발생기준
	발생량	재활용량(율)	발생량	재활용량(율)	
폐지(천 톤)	5,281	2,235(44%)	8,979	4,490(50%)	공급량
고철(천톤)	28,054	8,817(31.4%)	45,593	18,237(40%)	생산량
캔류(천톤)	220	19(8.8%)	325	105(32%)	공급량
페유리병(천톤)	764	321(42%)	980	461(47%)	생산량
페플라스틱(천톤)	1,943	173(8.9%)	3,245	649(20%)	발생량
페타이어(천개)	9,748	3,941(40%)	19,352	15,482(80%)	발생량
폐유탄유(천드럼)	922	311(33.8%)	2,136	1,282(60%)	발생량

폐자원 원료사용 의무화 규정
97년 목표 재활용 계획안 마련

오는 97년까지 폐지, 페유리, 페플라 스틱, 폐캔에 대한 제품생산자는 일정 비 율 이상의 폐자원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 용해야 한다.

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 원재활용 기본계획안을 마련, 지난 11 월 18일 환경보전 실무대책 위원회에 상 정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마련된 이 계획 안에 따르면 주요 재활용 대상품목 가운 데 폐지 50%, 고철 40%, 캔류 32%, 페 유리병 47%, 페플라스틱 20% 등의 재 활용 목표치를 설정, 오는 97년까지 의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계획안은 쓰레기 총발생량중 재활 용률을 92년 현재 29.8%에서 94년까지 45%로 제고시키고 생활쓰레기는 7.9% 에서 20%로, 사업장 폐기물은 54%에서 60%로 각각 끌어 올리기로 했다.

또한 쓰레기 수거 및 운송체제 효율화 를 기하기 위해 △자치단체는 수집기능 을 전담하고 재생공시는 기술개발, 비수 익성 분리수거품 자원화 및 수급조정기 능 전담 △읍·면·동별 간이 보관장소 3천 6백17개와 시·군·구별 집하선별장 2백

78개소 설치 △지역별 수거협의회 구성 △폐기물유통정보센터 전국망 구성 등의 항목을 마련했다.

생산·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도 △제품 설계시 사전평가제를 도입하고 합성수 지, 캔류의 재질표시를 의무화 △제조업 중별 재회수체계 구성 및 범용성 용기류 규격화 등을 확정했다.

이밖에도 △재활용품 사용권장제도 △ 재활용 산업체에 금융·세제지원 확대 △ 폐기물 회수·처리 비용의 원인자 부담체 계확립 △범용성 폐기물 신고제로 활성화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과대포장 등에 과태료 부과

서울시, 조례 제정 내년부터 시행예정

내년부터 제품을 과대포장하거나 포장용기 재사용 규정 등을 위반한 제조, 판매업자에 대해 최고 3백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1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한 조례제 정안'을 입법예고, 내년부터 포장쓰 레기 줄이기에 미온적인 업체에 대한 실질적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안은 11월 18일까지 공람기 간을 거친 뒤 20일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번 조례안은 작년말 환경처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전국 자 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확정된 것 으로, 앞으로 타 시, 도의 관련조례 안 결정 작업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 인다.

주요 내용은 [표3]과 같다.

[표 3] 포장재 과다사용 과태료 부과기준내용(서울시)

(단위 : 만원)

부 과 대 상	부 과 액		
	1차	2차	3차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기준 위반	200	250	300
PVC 첩합(라미네이션), 또는 도포(코팅) 포장재 사용	100	200	300
원구, 인형, 종합제품 포장에 스티로폼 사용	200	250	300
화장품(메이크업류) 및 세제류 용기중재 사용 가능한 제품 생산량이	100	200	300
해당제품 총 생산량의 5% 미만일 때			
백화점·도매센터 등에서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사용한 화장품 및	200	250	300
세제류를 진열·판매치 않을 때			
백화점·도매센터 등에서 구매자의 요구없이 포장된 제품을	200	250	300
재포장하거나, 쇼빙백·비닐백을 제공할 경우			
가전제품 제조·수입자가 완충재사용 감량화기준 및 포장재 회수의무 위반	200	250	300
기타 법령상 의무 위반	200	250	300